

전주지방법원 2022. 1. 12 선고 2021나3161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전주지방법원 2022. 1. 12 선고 2021나3161 판결

전주지방법원 2021. 2. 24 선고 2020가단850 판결

전 문

원고, 피항소인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 담당 변호사 김학수, 이창현, 한지영

피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중, 황준호

변론 종결2021. 12. 1.

판결 선고2022. 1. 12.

제1심판결전주지방법원 2021. 2. 24. 선고 2020가단850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B 사이에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2.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78,115,51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8,115,517원 및 이에 대하여 제1심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일부를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5쪽 제5행부터 제7쪽 제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B의 채무초과 상태

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B이 보유하고 있던 적극재산과 그 가액 및 소극재산과 그 채무액이 다음 [표1], [표2]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8, 19호증, 을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 주식회사, 주식회사 C,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표1] 적극재산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175,305,9001) 을 제14호증(감정평가서)의 2019. 2. 10. 기준 감정평가액 합계 177,693,900원 중 기계기구 가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갑10, 을14
2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자동차(2010년식)	7,600,000	다툼 없는 사실
3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카니발 자동차(2006년식)	3,590,000	다툼 없는 사실
4	(차량번호 3 생략) 오피러스 자동차(2006년식)	4,300,000	다툼 없는 사실, 갑16-1
5	(차량번호 4 생략) 소나타 자동차(2007년식)	4,800,000	다툼 없는 사실, 갑16-2
6	전주시 완산구 F아파트 G호	130,000,000	갑18
7	전주시 완산구 F아파트 H호		
합계	325,595,900		

[표2] 소극재산

1	E은행 대출금	85,000,000	이 법원의 E은행에 대한 2020. 3. 9.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2	E은행 대출금	54,000,000	이 법원의 E은행에 대한 2020. 11. 6.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3	C은행 대출금	107,650,753	이 법원의 C은행에 대한 2020. 11. 12.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4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출금	33,578,765	이 법원의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2020. 6. 24.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5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50,000,000	을3, 5
6	K 주식회사	3,299,000	갑19
7	L 대출금	4,000,000	
8	M 대출금	1,221,000	
9	N 대출금	2,378,000	
10	O 대출금	5,250,000	
합계	346,377,518		

나) 피고는 2017. 10. 20. B로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임차하면서 B에 대한 기존 대여금채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의 지급을 갈음하기로 하였으므로, 위 [표2] 순번 6번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B의 소극재산으로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B에게 대여하였던 돈으로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의 지급을 갈음한 것이고, 이에 따라 B로서는 장차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는 B의 소극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는 B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표2] 순번 5번 기재 채무를 변제받는 것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B에게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였으므로, 위 채무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B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바, 피고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B은 피고에게 위 [표2] 순번 5번 기재 각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단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의 방법으로 B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채권과 피고의 B에 대한 위 채권을 서로 상계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표2] 순번 5번 기재 채무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B의 소극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피고는 2012. 5.경 P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Q 소재 건물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800,000원으로 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기간의 종료일이 2019. 5. 28.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20,000,000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적극재산)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 임대차기간 종료일 무렵에 피고가 P로부터 위 보증금을 반환받은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을 제15 내지 제1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설령 피고가 위 시점에 20,00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여 위 적극재산 합계액에 위 채권액을 합하더라도, 위 소극재산 합계액에 미치지 못한다).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조지환

판사나상훈

판사오창민

별지

1) 을 제14호증(감정평가서)의 2019. 2. 10. 기준 감정평가액 합계 177,693,900원 중 기계기구 가액을 제외한 금액이다.